

[사 건 명] 행심 2018 - 1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2017. 11. 6. 수학여행 첫 날 같은 방에 배정된 청구인과 네 명의 학생들(△△△, ●●●, □□□, ■■■)이 같은 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실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진실게임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네 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학생, 착한 학생, 예쁜 학생 등의 순위를 정하다 점차 성적 순위(성관계 맺고 싶은 순위)를 정하였다

나.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2017. 11. 17. 쉬는 시간에 ■■■과 강민성이 여학생 김○○, 이○○에게 수학여행 중 여학생들의 순위를 정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여학생 김○○가 어떤 순위를 정한 것인지 궁금하여 ■■■에게 물어본 결과, 따먹고 싶은 순위(1위 이◇◇, 3위 김◇◇)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김○○가 이 사실을 피해 여학생 이◇◇, 김◇◇에게 알렸고, 이에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2017. 12.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에서 청구인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 조치를 하기로 심의 및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사건 당시 청구인은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으나 대다수 아이들이 참여하여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었고, ■■■과 ●●●의 주도로 성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나. 대화 내용 중 선정적 단어가 언급되어 청구인은 거부감이 들었고 어떤 단어는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있게 된 것이었다.

다. 수학여행 중 일부 남학생들의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지만 청구인은 그 대화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으며 해당 여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성적 감정도 없었으나, 의지와 상관없는 방 배정으로 인해 단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던 학생들과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라. 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상급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화내용에 대해 거부감이 들거나 성적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사건 당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거부감 등의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학폭위 회의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진실게임 특성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적극적 대화 방식이 아니었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든 대화에 참여한 것을 청구인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생활도 모범적인 학생이나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청소년기의 잘못된 성 개념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선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논의한 바 있다.

라. 피해학생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해 힘겨워 하고 있고, 피해학생의 부모님도 관련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에 본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2017. 11. 6. 수학여행 첫 날 같은 방에 배정된 청구인과 네 명의 학생들(△△△, ●●●, □□□, ■■■)이 같은 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실게임을 하게 되었는데(당시 같은 방에는 진실게임을 참여하는 학생 이외에는 다른 학생들은 함께 있지 않았음), 진실게임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네 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학생, 착한 학생, 예쁜 학생 등의 순위를 정하다가 성관계 맺고 싶은 순위를 정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진실게임을 하게 되었다.

(2) 이러한 진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도 진실게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진실게임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진실게임과 관련된 내용이 다른 학생에 의해 유포되었는데(청구인이 진실게임의 대화 내용을 유포시킨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그 순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교폭력신고에 의해 학폭위가 개척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진실게임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성관계를 맺고 싶은 순위'를 정하기 위함이었을 뿐,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과의 진실게임에 참여하는 학생과의 과거 경험사실을 토대로 그 학생과의 어떠한 과거 사실 경험 때문에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혹은 허위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진실게임에 참여하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견해 내지는 주관적인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점.

나) 진실게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에 대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참여한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진실게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이에서는 설령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진실게임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에 대해 서로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합의하에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

(2) 즉 청구인의 행위는 단지 진실게임에 참여하여 다른 학생이 주도하여 성적관계를 맺고 싶은 순위를 정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순위로 지목된 대상 여학생과의 어떠한 경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만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대화 내용이 다른 곳에 유포되거나 전파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진실게임에 참여하여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만을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의율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성

관계를 맺고 싶은 순위'를 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을 때 청구인만 진실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진실게임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실게임을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표명만을 한 청구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여전히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